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22 선고 2022가단1083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21. 8.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2. 4. 13. 접수 제12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태환

별지

[토지]

1. 부산광역시 북구 D 대 116㎡

[건물]

2. 부산광역시 북구 D 내 제조표E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F

표E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스래브지붕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64.89㎡

2층 55.35㎡

3층 56.13㎡

4층 31.74㎡

지하 70.59㎡

- 이 상 -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카드'라 합니다)으로부터 소외 C(이하 'C'라고 합니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법인입니다.

2) 피고는 C의 어머니로, 소외 망 H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 C은 G카드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카드론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사용 후 각 대금을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체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 회원가입신청서, 갑 제2호증 - 특수채권원장조회, 갑 제3호증 - 채권계산서)

- 아 래 -

(기준일자: 2021. 4. 30)

(단위: 원, %)

품 목	대출날짜	대출원금	잔존원금	인수전이자	인수후이자	합계	연체이자율
신용카드대금	2006-12-13	9,994,847	9,994,847	8,489,930	188,204	18,672,981	23.7%
장기카드대출	2017-04-13	25,000,000	25,000,000	19,791,170	455,856	45,247,026	22.95%
합 계			34,994,847	28,281,100	644,060	63,920,007	

2) 이후 G카드는 원고와 2021. 4. 21.자 자산매매계약에 의거 원고에게 I에 대한 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 채권양수도계약서, 갑 제5호증 - 채권양도통지서)

3) 이에 원고가 소외 C의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액은 2021. 4. 30. 기준 금 63,920,007원과 그 중 34,994,847원에 대하여 202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C의 무자력

1) 위와 같이 C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와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2) 우리법원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

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C의 악의 및 피고의 악의 추정

1) 우리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C과 피고는 모자관계로써 피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충분히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5. 원상회복의 방법 : 원물반환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한 2021. 8.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2. 4. 13. 접수 제1243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6. 결론

위와 같이 피고와 C의 협의분할약정은 원고와 같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